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9 선고 2024가단53428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22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9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2. 7.자로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9,408,54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9,408,5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장원정

별지